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2
----------	-----

2009년 6월 25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9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8. 3. 28. 일부개정 되어 2008. 7.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용조문 변경 반영(안 제2조제2호,제3호,제5호마목, 제7호; 안 제3조 제1호내지제6호)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석수)

-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8. 3. 28. 일부 개정 되어 2008. 7. 14.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간 위치를 상위법 체계를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정비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2
----------	-----

제출년월일 : 2009년 6월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청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2009.4.9. ~ 4.29.) 결과 : 별 첨

(3) 규제심사 대상 : 규제사무 없음

(4)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개인택시 3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형태
8.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자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4조** 위반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 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 관련)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0,000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제2조(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
-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 개인택시 3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 개인택시 3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 개조식 운휴하는 운영형태
 - 8.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지하는 행위
 -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3조의 규정 위반**
 2.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4조**

- 로 1개조식 운휴하는 운영형태
 - 8.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지하는 행위
 -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자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

<p><u>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u></p> <p>5. <u>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5조의 규정 위반</u></p> <p>6. <u>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5조의 규정 위반</u></p> <p>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u>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u></p> <p>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u>4조 위반</u></p> <p>5. <u>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u></p> <p>6. <u>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u></p> <p>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u>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u></p> <p>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p>
<p>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u>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u>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u>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u></p> <p>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u>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p>	<p>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p>

<p>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p> <p>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p> <p>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p> <p>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p>	<p>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p> <p>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p> <p>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p>
<p>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u>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u>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p> <p>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p> <p>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p> <p>② <u>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u>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u>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p> <p>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p> <p>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p> <p>② <u>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u>안 된다</u>.</p> <p>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u>안 된다</u>.</p> <p>제8조(환수) 허위 <u>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p>	<p>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u>아니 된다</u>.</p> <p>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u>아니 된다</u>.</p> <p>제8조(환수) 허위 <u>그 밖에</u>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p>
---	---